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문

대리진료(처방)은 의료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건복 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과-5011, 2014.12.22.)에 의거 <u>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u> <u>우 가족에게 대리진료(처방) 가능</u>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진료시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1. 현재 「의료법」 규정에 따라 대면진료가 원칙이나,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u>예</u> 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u>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u> 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
-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 2. 대리진료(처방)이 가능한 가족은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정하며, <u>가족 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불가</u>

대한의사협회

대리처방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92호)

- 대리처방사유: 재진으로 아래의 사유로 받는 경우 인정
 - ▲ 동일 상병
 - ▲ 장기간 동일 처방
 - ▲ 환자 거동 불능
 - ▲ 주치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을 인정"

대리처방에 대한 안내문

Q. 대리처방코드는?

AA254090

Q. 야즈등 대리처방가능한가요?

만성질환에서 진찰이 크게 필요없고, 같은 약을 repeat하는 경우에서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내방이 불편하여 힘든경우는 가족중에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초진은 안되고 재진시에만 가능함으로 야즈등의 처방시에는 안됩니다.

Q. 아버지가 구치소수감되어서 아버지 약처방을 대리처방받겠다 하는데 구치소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을 어찌하나요? 확인되면 처방되는지요?

안됩니다.

구치소안에도 의사들이 있고, 함부로 약물 반입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부득이한 대리처방시에 청구는 어떻게하나요? 구치소계신분이고 증명서해오셨길래 급여해드렸는데 혹시 청구가 안되거나 하진않겠지요? 따로 코드를 넣거나해야하나요?

위의 3가지 조건이 맞으면 4항의 주치의 인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접수때 대리처방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교정시설에 도서, 의약품의 반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반입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수용기관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로 봐서는 구치소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을때만 가능 할것 같습니다.